

# 한-EFTA 원산지 절차 요약

구분		한-EFTA FTA																						
발효일자		2006. 9. 1.																						
협정국		스위스·리히텐슈타인·아이슬란드·노르웨이																						
원산지 증명서	발급주체	수출자(스위스지프는 기관발급)																						
	서식	상업송장 또는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규정된 "원산지 신고서" 문안 기재																						
	유효기간	서명일로부터 1년																						
	제출면제기준	미화 1,000불 이하(한국), 유로 500이하(EU)																						
	참고사항	스위스지프는 "스위스연방농업국"이 인증한 기관인 연방농업청의 위임을 받아 4개 특산치즈 제조사가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																						
	기타	*원산지 신고문안(송품장 등 상업서류)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(Customs authorisation NO 030-11-234567①) declares that,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, these products are of (KR②)preferential origin. .....장소 및 일자 ..... ③ .....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..... ④ ① 송품장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이 란에 기재되어야 한다.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괄호 안의 단어는 생략되거나 빈칸으로 남겨둔다. ② 제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한다. ③ 그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되는 경우 이 표시는 생략될 수 있다. ④ 수출자의 서명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, 서명의 면제는 서명자의 이름이 면제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.																						
부가가치 계산 방법	계산방법	MC (iMport Contents) 법																						
	부가가치 기준	25~60%																						
	기준가격	EXW (환급 내국세 공제)																						
	비고	비원산지재료 비율이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																						
역외 가공	품목	일반품목(HS 6단위)	특정 267품목(HS 6단위)																					
	지역	제한 없음	제한 없음																					
	가공비	역외 부가가치 10% 이하 * 역외 부가가치 = 재료비+가공비+수송비	역외 부가가치 40% 이하, 역내산 재료비 60% 이상																					
제3국송장발행시		발행 가능하나 원산지신고서 문안은 반드시 수출 당사국 소재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서류에 기재																						
원산지 검증	검증	검증방법	간접																					
		검증주체	수출국 세관(필요 시 수입국 참관 가능)																					
	회신	회신기간	10개월																					
		회신주체	수출국 세관																					
	미회신 조치	협정관세 적용 제한																						
	근거조항	부속서 1 제24조																						
참고사항		■ 한-EFTA FTA 제역 상대국 세관인증번호 체계 등 정보(인증수출자 인증번호 체계) * 한-EFTA FTA 부속서 1 제 16 조에 따른 인증수출자(Approved Exporter)는 한-EFTA FTA 부속서 1 부록 3 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작성시 본인의 성명 및 서명 기재가 생략되고, 그 대신 세관인증번호 란에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.																						
	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국가</th> <th>인증번호(예)</th> <th>인증번호 체계 설명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아이슬란드</td> <td>1234-2008</td> <td>등록번호(4자리)-인증년도(4자리)</td> </tr> <tr> <td>노르웨이</td> <td>NO/07-123456789</td> <td>국가명(2자리) / 인증년도 (연도 마지막 2자리)-등록번호 (9자리)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4">스위스</td> <td>① 356</td> <td>① 인증번호(3자리)</td> </tr> <tr> <td>② 356 / 1998</td> <td>② 인증번호(3자리) / 인증년도(4자리)</td> </tr> <tr> <td>③ 1234</td> <td>③ 인증번호(4자리)</td> </tr> <tr> <td>④ 1234 / 1998</td> <td>④ 인증번호(4자리) / 인증년도(4자리)</td> </tr> <tr> <td>리히텐슈타인</td> <td>스위스와 동일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국가	인증번호(예)	인증번호 체계 설명	아이슬란드	1234-2008	등록번호(4자리)-인증년도(4자리)	노르웨이	NO/07-123456789	국가명(2자리) / 인증년도 (연도 마지막 2자리)-등록번호 (9자리)	스위스	① 356	① 인증번호(3자리)	② 356 / 1998	② 인증번호(3자리) / 인증년도(4자리)	③ 1234	③ 인증번호(4자리)	④ 1234 / 1998	④ 인증번호(4자리) / 인증년도(4자리)	리히텐슈타인	스위스와 동일	
국가	인증번호(예)	인증번호 체계 설명																						
아이슬란드	1234-2008	등록번호(4자리)-인증년도(4자리)																						
노르웨이	NO/07-123456789	국가명(2자리) / 인증년도 (연도 마지막 2자리)-등록번호 (9자리)																						
스위스	① 356	① 인증번호(3자리)																						
	② 356 / 1998	② 인증번호(3자리) / 인증년도(4자리)																						
	③ 1234	③ 인증번호(4자리)																						
	④ 1234 / 1998	④ 인증번호(4자리) / 인증년도(4자리)																						
리히텐슈타인	스위스와 동일																							
		※ 중간에 or, / 을 쓰느냐는 상대국 담당자에 따라 달라질 수있음 ■ 특이사항 - 노르웨이 : '07년 이전 인증번호(예 : NO/06-123456789)는 08. 1. 1 이후 유효하지 않음 - 스위스 : 리히텐슈타인 검증대상도 스위스로 검증요청(관세동맹에 따라 동시 유효함)																						